
학교법인 운영임원/정관 업무 안내

2019. 12.

 교육 부
(사립대학정책과)

제2절 학교법인의 기관

I 임원

1. 임원의 구성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제1항 및 제2항

-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②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위원회(이하 "대학평의위원회"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 학교 법인의 임원에는 '이사'와 '감사'가 있으며 이사는 7인 이상, 감사는 2인 이상이어야 함
 - 학교의 장(이사로 선임된 경우 제외)이나 법인 사무국장은 임원이 아님
 - 임원의 정수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예시) '9인 내지 15인' 또는 '9인 이상'과 같이 규정하여서는 안됨
-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사장이 됨. 따라서 이사장은 이사에

포함되는 개념임

- ※ 학교법인의 경우, 이사장과 감사는 상설 필요기관이며 이사회는 비상설 필요기관 (이사는 합의제의결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에 불과하며 독립된 기관이 아님)

○ 개방이사의 선임

- 개방이사는 이사정수의 1/4(소수점 이하는 절상)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 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두어야 함
- 위원은 5인 이상 홀수로 하며,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종교지도자 양성 법인의 경우 종교단체에서 추천)
- 2 이상의 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음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법인 산하에 소속된 기관이 아닌 독립된 기관으로 추천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 개방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함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각 단체들이, 추천위원에게 특정인을 개방이사 후보자로 추천 또는 선임하도록 관여할 수 없음

※ 법률자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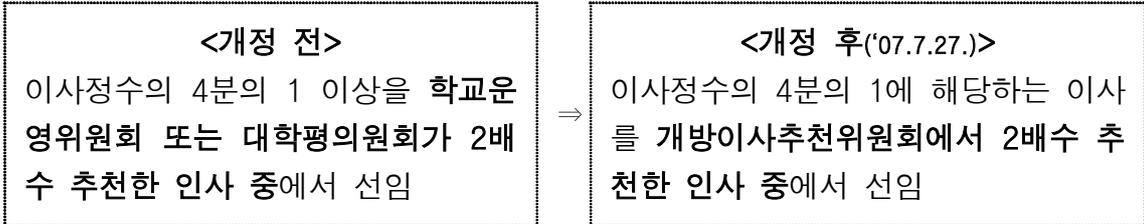
【법무법인 3곳】 → 의견일치

- 잔여임기가 남은 이사가 개방이사 재선임 약속을 받고 사임한 후, 이사장의 요구를 받은 개방이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개방이사로 선임된 것은 사학운영 투명성확보를 위한 개방이사 제도를 잠탈하기 위한 행위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므로 관할청은 이를 무효인 선임행위로 보아 임원취임승인신청을 거부함이 상당함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취지

-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실현하고 건학이념 구현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도입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성격

- 추천위원회는 업무 성격으로 볼 때, 비상설기구로 하여 필요시 구성 운영하고, 후보자 추천 후 해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아래에 두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적으로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요청을 받아 내부논의를 거쳐 법인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음.

☞ 개방이사 추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없으며,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해야 함.

※ 학교법인이 대학, 전문대, 고등학교를 각각 1교씩 설치·경영하고 있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3교중 어느 한 곳(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을 정하여 두어야 하며,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 정수 1/2 범위 내에서 3개교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개방이사 선임 절차



임기만료 전 3개월)

할청에 추천 요청

※ 추천감사도 개방이사 선임절차와 동일하나, 추천감사는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해당 추천자 선임

※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 선임 시 학교법인(이사회)는 추천된 후보자를 반려 또는 재추천 요구를 할 수 없음

- 이사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방이사 또는 추천감사가 선임되지 못하였다더라도, 후보자 본인의 사임 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취소가 있지 않는한 추천된 후보자의 자격은 유효함

○ 개방이사 우선선임의 원칙

사립학교법 부칙 <제8545호, 2007.7.27> 제2조

제2조 (이사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임원 구성에 결원이 발생하여 개방이사 선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방이사를 우선 선임하여야 함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사례

▷ 「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시 선임할 개방이사의 2배수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하나, 귀 법인의 추천 위원회는 단수의 개방이사 후보자를 추천한바 동 법률에 위반임.

▷ 장○○, 허○○, 류○○ 이사(개방이사)의 경우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이사 대상자 추천시 「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2배수인 6명을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하나 4명을 추천함으로써 개방이사 선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임원(이사) 취임 승인을 반려하오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선임하시기 바람

▷ 잔여임기가 남은 이사에 대하여 개방이사 선임을 약속하여 사임하도록 하고, 개방

이사추천위원회 위원들 중 일부에게 특정인을 개방이사 후보자로 추천·선임하도록 요구한 것은, 독립된 기관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권한을 침탈하여 사학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이사 제도를 무력화한 행위로 임원(이사) 취임 승인을 반려함

▷ 귀 법인의 개방이사는 이사정수(11명)의 4분의 1인 3명이 있어야 하며, 현재 개방이사가 2명인데도 금번 이사회에서 일반 이사를 선임하여 「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 및 부칙 제2조 ‘개방이사 우선선임 원칙’을 위반하였음.

참 고 판 례

▷ 개방이사 1명 등 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구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항 에서 정한 개방이사의 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甲학교법인의 이사 乙등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법인의 이사장 丙에 대한 ‘이사장 불신임 건’등을 결의하자, 丙이 이사회결의 효력 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이사회결의 당시 개방이사 수에 결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사회 구성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2013마1801)

▷ 개방이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제4항은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교구성원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방이사가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비율,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2007헌마1189)